제1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재정경제부)	1.고시 적용시한 연장(강화) ○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금지 – 사업자는 폭리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,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 또는 반출 불가 ○ 매점매석 판단기준 – (기존사업자) '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평균 판매량의 110%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– (신규사업자) 제조·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– (모든 사업자) 동일 구매처에 대해 월별 판매량이 '25.12.월~'26.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○ 판매 또는 반출 물량 보고 – 식약처장이 사업자에 대한 제조 · 판매 · 반출물량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– 식약처장이 매점매석 행위 등 확인 시 시정명령 및 벌칙 등 「물가안정법」제9조,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	규제심사 완료